간판 설치허가 안내

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구청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하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3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강제철거 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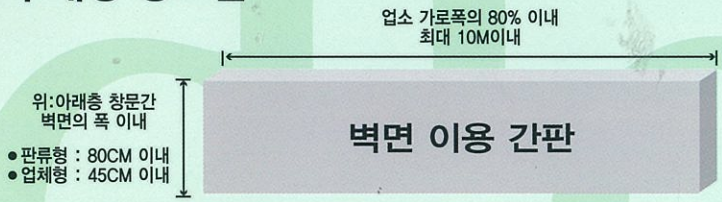
▣ 표시 간판의 허용 수량

상업지역, 공업지역, 준주거지역 : 업소당 2개

일반주거 · 전용주거 · 녹지지역 : 업소당 1개

※ 용도 지역별 허용 간판수량(1~2개) 초과하여 설치 불가

▣ 신고·허가 대상 광고물



벽면이용(가로형)간판

- 건물 5층 이하 설치 (가로크기는 업소폭의 80%이내, 10m이내)
- 1~3층 : 판류형 간판(세로 폭 80cm 이내) 또는 입체형간판(문자의 세로크기 45cm 이내)
- 4~5층 : 입체형 간판(문자의 세로크기 45cm 이내)

※ 1~3층 : 간판 면적 5㎡ 이상만 신고·허가 대상임

4~5층 :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간판이 신고·허가 대상

돌출간판

- 가로길이는 80cm 이내, 세로크기는 3.5m 이내,
- 벽면으로부터 최대 1m까지 돌출, 간판 두께는 30cm 이내
-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(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)

기타 지주이용간판, 옥상간판, 현수막게시틀 등

▣ 문의 :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☎ 860-2971, 2973

GURO 구로구